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수일 의원)

의안 번호	278
----------	-----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전수일 의원

찬 성 자: 지광천, 장문혁의원

1. 제안이유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매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6조)

라. 지원대상자 유형 및 세부 지원 내용(안 제7~8조)

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0. 09. 29. ~ 2020. 10. 14.(15일간)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0. 09. 23. ~ 2020. 09. 28.,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거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

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이·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호 ~ 11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전수일 의원
연락처	(033) 330 -2500